

붙임1 교정의 날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I 개회 선언

1. 일 시 : 2019. 10. 22.(화), 15:30 - 18:00
2. 장 소 : 교정본부 회의실
3. 출석위원 : 위원장 : 이성윤(직무대리)
 위 원 : 강호성, 최강주
 천대엽, 이용식, 황순철
4. 출석간사 및 서기 : 간사 서기관 윤순풍, 서기 교감 김동욱
5. 개회선언

금일은 차관님의 장관업무 대행으로 인해 검찰국장인 제가 위원회 직무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교정의 날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II 취업조건부 가석방 취업현황

- 위 원 장 : 먼저 9월 정기 가석방으로 출소한 취업조건부 가석방자 취업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취업조건부 가석방자 취업현황’을 보시면, 9월 30일에

출소한 취업조건부 가석방자 5명을 포함하여 총 42명이 취업기관에 적응하여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 9명은 형기종료 되었으며, 1명은 10월 18일 현재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로 소재불명으로, 소재 파악 시 가석방 취소 예정입니다.

이번 교정의 날 기념 가석방 심사에는 총 12명의 대상자가 신청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가석방 부조리 예방을 위해 9월부터 가석방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조리와 관련한 신고 또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석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Ⅲ 안건 심의

1. 안건 상정

위 원 장 : 간사는 안전상정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오늘 가석방회의 심사대상은 총 1,054명으로, 지난 심사에서 보류된 5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신청인원 1,054명 중 필요적 신청은 338명으로 적격 138명, 부적격 174명, 신중검토 3명, 보류는 23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분류심사 당월 가석방 신청이 이번 심사부터 상정

되었으며, 총 67명이 신청되어 적격 66명, 보류 1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적격 검토 기준**은,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중 기능 자격 취득자, 전국기능대회 입상자 등 모범수형자의 경우 가석방 후 재복역 사례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죄질이 다소 나쁘더라도 가능한 적격 검토하고,

재범예측지표 1급, 경비처우급 S2급 기준으로, 일반범죄는 형집행률 70%, 강력범죄는 형집행률 83% 전후로 검토하였고,

외부업체와 채용약정서를 체결한 취업조건부 가석방 신청자의 경우 기존 조건에서 최대 10%이내에서 완화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부적격 검토는 수형태도가 불량하거나, 보호관계가 미약한 자와 동종 및 이종전과가 다수인 자는 원칙적으로 부적격 검토하되, 잔형기가 짧고 수형생활이 양호한 자는 선별적으로 적격 검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및 사기 상습범과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적격 검토하였습니다.

신중검토는 14명으로, 신분특이자 3명, 무기·장기 수형자 3명, 취업조건부 3명, 기타 5명입니다.

검토결과, 대상인원 총 1,054명 중, 적격 746명(70.8%), 부적격 256명(24.3%), 신중검토 14명(1.3%), 보류 38명(3.6%)으로 각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 원 장 : 가석방 적격 안전을 심사한 후 부적격, 보류, 신중검토 안전 순으로 심사 하겠습니다.

취업조건부 가석방 심사는 본 안전 심사와 분리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2. 적격 안전심사

위 원 장 : 먼저 “적격 안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는 검토 의견과, 적격 안전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사안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적격 의견은 취업조건부 가석방 신청자 3명을 제외한 총 743명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검토기준에 근거하여, 배부된 자료와 같이 적격 의견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적격의견 대상자 중 특이자 1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격검토 1권의 심사번호 227번 ■■■■■는 ■■■■■ 대표 이사로 재직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을 가장하여 ■■■■■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년의 재무재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하였습니다.

경비처우급 2급, 재범예측지표 1급으로 형 집행률 87.2%, 잔형기 2개월 10일 입니다. 공범 2명은 가석방 출소 하였고, 이 사람은 교육 우수로 소장표창을 받고 한식조리 직업훈련을 수료하는 등 수용생활 태도가 양호합니다.

위 원 장 : 위원님들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공범이 모두 가석방으로 출소하였고, 범죄내용도 허위 공시에 관한 것이므로 허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원 : 범죄경력도 도로교통법 벌금 2건으로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적격의견입니다.

다른 위원 : 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장 : 전원 적격 의견이므로 적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다음 대상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다음으로, 심사신청 후 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대상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격검토 3권의 심사번호 717번 ■■■■■는 사기 및 유사수신으로 3범입니다. 이 사람은 ■■■■■ 기계구입과 관련한 사업투자 명목으로 7천만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이번 주 중으로 검찰로 송치할 예정인데 본건과 추가사건 등으로 볼 때 부적격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원 장 : 위원님들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사기 3범인데 추가건 또한 사기건이므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부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 본 건의 유사수신 및 편취금액이 ■■■억 이상으로 사회적 파장도 크다고 판단되므로 부적격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 : 부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장 : 전원 부적격 의견이므로 부적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검토할 대상자가 없으면,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적격 안전심사

위 원 장 : 간사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부적격 의견은 총 취업조건부 가석방 심사대상자 6명을 제외한 총 250명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검토기준에 의거하여, 배부된 자료와 같이 부적격 의견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위 원 장 : 부적격 안전심사 대상자를 위원님별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하셨는데 심사에서 검토할 대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771번 ■■■■■의 경우 범행 당시 망상장애로 출소 후에도 치료의 필요성이 있을 것인데 보호관찰을 통해 정신과 입원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오히려 형기종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장 : 정신과 치료를 조건으로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습니까?

간 사 : 현재 치료조건부 가석방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 원 : 본인이 치료받을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류 의견입니다.

위 원 : 본인의 의지를 확인한 후 심사를 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류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 : 보류 의견입니다.

위 원 장 : 보류 의견이 다수이므로 보류 의결하겠습니다.

위 원 : 772번 ■■■의 경우 범죄경력도 없고, 10개월간 작업을 하였으며 보호관계도 양호하므로 허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원 : 본 건이 방산비리와 유사하고 ■■■의 경우 불량이면 병사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불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 잔형기가 2개월 20일로 짧고 범죄경력도 벌금 2건으로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 경비처우급이 1급이고, 수형생활태도가 양호하므로 적격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 : 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장 : 적격 의견이 다수이므로 적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 심사번호 775번 ■■■은 강도, 상해 및 편취 범죄가 있으나 상해는 각 4주, 2주 정도이고 피해금액도 5천만원 정도로 적은 편이므로 허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원 : 범죄경력을 보면 상해와 사기로 집행유예 3건 및 벌금 8건이 있어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형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 본 건 범죄내용도 동거녀를 발로 차서 쓰러뜨리고 감금하는 등 좋지 않은데다 합의도 되지 않았습니다. 부적격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 : 부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장 : 부적격 의견이 다수이므로 부적격 의결하겠습니다.

- 위 원 : 심사번호 766번 ■■■■■의 경우는 잔형기가 1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석방을 불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간 사 : 형령 형기 종료 후 1년 내 재범자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부적격 의견으로 상정하였습니다.
- 위 원 : 한달 미만인 경우에는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사회방위상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 원 : 한달 미만의 잔형기자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 원 장 : 간사는 방안을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 보류 안건심사

- 위 원 장 : 간사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보류 의견의 경우 대부분의 가석방 적격요건은 충족하나 형집행을 미달, 잔형 과다로 다음달 심사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총 38명입니다.
- 위 원 장 :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일동 : 보류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 원 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5. 신중검토 안건심사

위 원 장 : 다음은 신중검토 안전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는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신중검토 대상자는 취업조건부 3명을 제외한 총 11명입니다. 먼저 무기 및 장기수형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번호 1032번 [REDACTED]입니다.

이 사람은 채무독촉에 시달려 고민하다 [REDACTED]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자 드라이버와 면도칼을 준비한 후 침입하여 [REDACTED]을 절취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 사람을 알아보고 저항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REDACTED] 살해하였습니다.

경비처우 1급, 재범예측지표 2급의 무기수형자로서 실집행기간 28년 1월 9일로 현재 만 73세의 고령입니다. 총작업기간은 20년 7개월이며, 양복기능사 등 2종의 자격을 취득하고, 교정작품전시회에 8회 입상하였으며, 출소 후에는 신원보증인이 제공하는 아파트에서 생활할 계획입니다.

위 원 장 :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범죄내용을 보면 현재 기준으로는 무기징역을 받을만큼 심각한 범죄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수형생활태도가 양호하므로 허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원 : 73세의 고령자로 목사의 신원보증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적격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 : 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장 : 전원 적격의견이므로 적격 의결하겠습니다.

간 사 : 다음으로 심사번호 1033번 [REDACTED]입니다.

이 사람은 위 병원 입원환자로 사귀게 된 여자 피해자와 [REDACTED]를 한 후 피해자가 병실로 돌아와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자 당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REDACTED] 하였습니다.

무기수형자로 실제 집행기간은 27년 6월 11일이며, 경비 처우급 1급, 재범예측지표 2급입니다. 총 작업기간은 20년 2개월이고 전기공사 산업기사 등 총 8종의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출소 후에는 여동생이 운영하는 가구공장에 취업할 예정입니다.

수형생활 태도와 보호관계가 양호하지만, 본 건의 1심에서는 위의 피해자에 대해 강간치상이 인정되었고, 이전에도 강간치상 범죄경력에 있어 신중검토로 상정하였습니다.

위 원 장 :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2심에서도 피해자 가족은 강간을 당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 범죄경력에도 강간치상이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적격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 : 부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장 : 전원 부적격 의견이므로 부적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 : 다음으로 심사번호 1034번 [REDACTED]입니다.

이 사람은 처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자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살을 잡아 무릎으로 가슴부분을 찔러 살해한 다음 이 사람의 [REDACTED] 하였으며,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집을 방화하였으나 119 진화로 실패하고 이후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습니다.

경비처우 3급, 재범예측지표 3급이고 형집행률 95.9%, 잔형기 7개월 18일입니다. 고령자로서 총 작업기간은 7개월이며, 자녀의 접견 등으로 보아 보호관계는 양호합니다.

본 건을 합의하고 보호관계도 양호하지만 2명을 살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경력도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로 상정하였습니다.

위 원 장 :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하였고, 사체를 은닉하는 등 범죄내용을 고려할 때 가석방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 고령이기는 하나 다수의 범죄경력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적격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 : 부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장 : 전원 부적격의견이므로 부적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 : 다음으로 심사번호 1035번 [REDACTED]입니다.

이 사람은 [REDACTED]으로 [REDACTED]이라는 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선정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총 [REDACTED]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습니다. 경비 처우 1급, 재범예측지표 1급으로 형 집행률 91.4%, 잔형기 4개월 14일로 벌금 및 추징금을 완납하였고, 수용기간 동안 약용식물자원관리사 등 2개의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출소 후에는 지인이 운영하는 IT회사에서 일할 계획입니다.

수용생활 태도와 보호관계가 양호하지만, 선출직 고위공직자로서의 위치와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검토로 상정하였습니다. 참고로 9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점을 고려하여 전원의견으로 보류 의결되었습니다.

위 원 장 :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형 집행률이 90% 이상이고,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허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원 : 약용식물 자원관리사를 취득하는 등 수형생활태도가 양호하고 처의 접견 등 보호관계도 양호하므로 적격의견입니다.

다른 위원 : 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장 : 전원 적격의견이므로 적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 : 다음으로 심사번호 1036번 []입니다.

이 사람은 []으로 []으로
활동하면서 []과 []로부터 []
[]을 받는 등 [] 상
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
[]하여 []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
부받았습니다. 경비처우 1급, 재범예측지표 1급으로 형
집행률 92.0%, 잔형기 2개월 13일이며, 벌금 및 추징금
을 완납하였고, 수용기간 동안 플라스틱 창호기능사를
취득하였습니다.

수용생활 태도와 보호관계가 양호하지만,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에 대해 사회적인 불신감을 조성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검토로 상정하였습니다. 출소 후에는 이
사람이 설립한 []에서 일할 계획입니다.

위 원 장 :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이 사람 또한 형집행률 92%로 사회물의를 사범의 통상적인
허가 수준보다 높으므로 적격의견입니다.

위 원 : 범죄경력이 없고, 수용생활 태도 또한 모범적이므로 허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 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장 : 전원 적격의견이므로 적격 의결하겠습니다.

간 사 : 다음으로 심사번호 1037번 ■■■■■입니다.

이 사람은 ■■■■■의 대표이사로서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 상당을 편취하고, 공사현장에 투입될 자금 ■■■■■ 상당을 횡령하였으며, ■■■■■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밖에 허위 재무제표를 통해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경비처우 1급, 재범예측지표 2급으로 형 집행률 91.8%, 잔형기 3개월이며, 보호사범으로서 만성신부전증으로 의료거실에 수용되어 주 3회 혈액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회복은 대출금 ■■■■■ 전액변제, 횡령금액 일부에 대해 변제하였습니다. 환자로서 가료가 필요하고 보호관계도 양호하나 ■■■■■회사 대표로서 회사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선의의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검토로 상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심사에서는 만성 신부전 등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허가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미변제 금액이 많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적격 2명, 부적격 5명 의견으로 부적격 의결되었습니다.

위 원 장 :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이 사람은 혈액투석을 주 3회가량 받기 때문에 수용관리적 차원에서도 어려운 면이 있고, 출소 후에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위 원 : 실형 범죄경력 없이, 출소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병을 치료할 필요가 있으므로 허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 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장 : 전원 적격 의견이므로 적격 의결하겠습니다.

간 사 : 다음으로 심사번호 1038번 ■■■■■입니다.

이 사람은 피해자인 처에게 담배값 2천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마트에서 소주 1병을 사 마신후 피해자와 서로 다투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줄라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경비처우 1급, 재범예측지표 3급으로 형 집행률 69.8%, 잔형기 2년 1개월 14일 입니다. 82세의 고령자로서 외이도암 및 신부전 4기,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가료가 필요한 자로 판단되고, 출소할 경우 아들이 요양병원으로 모실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잔형기가 2년 이상 남아있어 신중검토 의견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위 원 장 :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82세의 고령으로 출소후에 요양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아야 하므로 허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원 : 유족들도 처벌불원 하였고, 가족과의 접견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적격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 : 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장 : 전원 적격 의견이므로 적격 의결하겠습니다.

간 사 : 다음으로 심사번호 1039번 ■■■■■입니다.

이 사람은 석유제품운반선 선장으로 선원 5명을 승선시켜 인천 부두를 출항하여 항행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로 선원 및 승객 22명이 타고있던 낚시어선을 들이받아 전복하게 함으로써 15명을 익사하게 하고 7명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경비처우 1급, 재범예측지표 1급으로 형 집행률 95.3%, 잔형기 1개월 5일이며, 세탁부에서 1년간 작업하였고 가족접견 등 보호관계도 양호합니다. 선장으로서 안전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판결문상에는 피해선박에도 과실이 있고, 피해자들을 위해 보험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검토 의견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위 원 장 :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피해선박에도 책임이 있고, 이 사람의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 수형생활 태도가 양호하고 가족 접견으로 볼 때 보호관계도 양호하므로 허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 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장 : 전원 적격 의견이므로 적격 의결하겠습니다.

간 사 : 다음으로 심사번호 1040번 ■■■■■입니다.

이 사람은 어린이집 담임교사로서 피해자인 3세 여아에 대한 출결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연락도 하

지 않은 채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되도록 하여 위 어린이가 탈수 및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경비처우 2급, 재범예측지표 1급으로 형 집행률 93.7%, 잔형기 23일로 본건을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도 처벌불원 하였으며, 부모의 접견으로 보아 보호관계도 양호하지만, 본 사건이 다수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문제가 되어 신 중검토로 상정하였습니다.

위 원 장 :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재범가능성이 낮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와 처벌불원하였으므로 허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원 : 범죄경력이 없고, 당뇨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적격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 : 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장 : 전원 적격 의견으로 적격 의결하겠습니다.

간 사 : 다음으로 심사번호 1041번 ■■■■■입니다.

이 사람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2세의 피해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교실벽면으로 강하게 밀치고,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는 등 50회에 걸쳐 신체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경비처우 2급, 재범예측지표 1급으로 형 집행률 93.0%, 잔형기 21일로 거실작업을 6개월간 하였습니다. 모와

남편의 접견으로 보아 보호관계가 양호하고, 출소 후에 초등학생인 2명의 아들을 양육해야 하지만, 보육교사로서 2세에 불과한 아동을 학대하고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검토 의견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위 원 장 :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재범가능성은 없으나 앞의 대상자와 달리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학대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 잔형기간이 20일에 불과하고,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 피해아동의 정신적인 피해가 장기간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석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위원 : 부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장 : 부적격 의견이 다수이므로 부적격 의결하겠습니다.

간 사 : 다음으로 심사번호 1042번 ■■■■■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 어선 선장으로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하여 조업을 하던 중 해양경비대가 어선에 접근하자 돌을 집어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해경 2명에게 각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경비처우 1급, 재범예측지표 3급으로 형 집행률 70.6%, 잔형기 1년 5개월 23일입니다. 건조대 제작 등 총 작업

기간은 3년이며, 벌금 6천만원은 노역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외국인으로 강제퇴거 대상이지만 출소후에 어업에 종사할 예정으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어 신중검토로 상정하였습니다.

위 원 장 :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출소 후에도 어업에 종사한다면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부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 해양경찰에 대해 불법적인 저항으로 볼 때, 추후에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불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 부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장 : 부적격 의견이 다수이므로 부적격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6. 취업조건부 가석방 안건심사

위 원 장 : 다음은 “취업조건부 가석방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는 심사대상자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대상자들은 일반가석방과 동일한 검토기준에 근거하여, 기존 가석방 허가기준보다 최대 10%이내에서 완화하여 심사신청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대상인원 총 12명 중 적격 3명, 부적격 6명, 신중검토 3명으로 각 상정하였습니다.

위 원 장 : 먼저 취업조건부 가석방 적격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적격검토자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동 : 3명 모두 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적격 대상자 3명 모두 적격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적격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적격 검토자에 대한 의
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심사번호 1049번 ■■■■■은 은행대출상담사로 오랫동안
일을 하였고, 시행 사업에 대해서도 일을 돕는 수준으로
취업조건부 가석방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 상해치사인데 집행률이 75.6%로 다소 낮다고 판단되고
차량렌탈업체를 운영할 정도로 경제력이 있다고 생각
되므로 취업조건부 가석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위원 : 부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장 : 부적격 의견이 다수이므로 부적격 의결하겠습니다.

위 원 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취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자 중 신중
검토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는 심사대상자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심사번호 1052번 ■■■■■입니다.

이 사람은 빌라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 따라가 머리를 세게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
하게 하여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2회 강취 미수에 그치고 빈 주택의 현관에 들어가 가방을 절취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5.6%이고, 잔형기는 11개월 27일로, 총 작업기간은 2년 3개월로 소장표창을 받는 등 수형생활태도가 양호하며, 부모의 접견 및 전화통화로 보아 보호의지도 양호합니다.

출소 후에는 [REDACTED]에 위치한 의료용 보행기 제조업체 '[REDACTED]'에 취업하고, 자가에서 출퇴근 할 계획입니다.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이 예상되나 충동 조절 장애로 입소초기까지 정신과 약을 복용한 점과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검토 의견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위 원 : 일반적인 강도상해 기준보다 집행률이 낮으므로 다음에 재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충동조절 장애도 있으므로 취업조건부 가석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위원 : 부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장 : 전원 부적격 의견이므로 부적격 의결하겠습니다.

간 사 : 심사번호 1053번 [REDACTED]입니다.

이 사람의 내연녀인 피해자 [REDACTED]이 또 다른 내연남 [REDACTED]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내연녀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2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1회 차안에 감금하였으며, 내연녀의 남편인 피해자 [REDACTED]의 얼굴을 때려 6주간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람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위 기간 중 ■■■■■이 내연남인 피해자 ■■■■■를 계속 만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피해자 ■■■■■의 가슴부위를 찔러 살해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4.5%이고, 잔형기는 8개월 3일로, 총 작업기간은 9년 8개월입니다. 부모의 접견 및 전화통화로 보아 보호의지는 양호합니다.

출소 후에는 ■■■■■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물류업체인 '■■■■■'에 취업하고, 기숙사에서 생활할 계획입니다. 피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끊임 없이 집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출소 후 재범이 우려되는 점과 징벌을 고려하여 신중검토 의견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위 원 : 본 건과 집행유예 실효건 모두 같은 피해자로부터 발생한 사안이고, 출소 후 보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불허의견입니다.

위 원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폭력성향으로 징벌을 받는 등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적격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 : 부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장 : 전원 부적격 의견이므로 부적격 의결하겠습니다.

간 사 : 심사번호 1054번 ■■■■■입니다.

이 사람의 애인인 피해자가 이 사람의 실직과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욕조에 집어넣고 샤워기를 틀어 익사하게 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 1,900만원 상당을 절취 및 편취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1.5%이고, 잔형기는 1년 8개월 18일로 작업기간은 15년 9개월이며 위 기간 중 3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고졸검정고시를 합격하였습니다.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고, 형과 이모가 접견을 오고 있습니다.

출소 후에는 ■■■■■에 위치한 두부 제조업체인 ■■■■■에 취업하고, 기숙사에서 생활 할 계획입니다. 범죄경력이 없으나, 피해자를 살인한 후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 등을 인출하여 도피하는 중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수형생활 중 징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검토 의견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위 원 : 이 사람은 수용기간 동안 자격증을 3종 가량 취득하는 등 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허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원 : 기숙사 생활을 할 예정이고, 업종과 이 사람의 연령등을 고려했을 때 지속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적격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 : 적격 의견입니다.

위 원 장 : 전원 적격 의견이므로 적격 의결하겠습니다. 이로써 취

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자는 적격 4명, 부적격 8명으로 의결하겠습니다.

IV | 폐회 의결

위 원 장 : 이상 교정의 날 기념 가석방 심사 결과 총 1,054명 중 적격 754명, 부적격 261명, 보류 39명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본 회의는 2019. 10. 22.(화), 15:30에 시작하여 18:00에 마치다. 끝.